

보도시점 2025. 2. 11.(화) 조간
2025. 2. 10.(월) 12:00

배포 2025. 2. 10.(월)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안정적인 지역 근무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1일(화)부터 3월 7일(금)까지 지역필수 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医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 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백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 (예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 활용 지역 정주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 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 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임희주 (044-202-2681)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의료 역량·신뢰 강화
- (지원예산) '25년 1,352백만원
- (지원근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1조 등
- (지원대상) 의료기관과 지역 장기 근무를 계약한 8개 과목* 전문의
 -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지원내용) 지역 근무 수당(월 4백만 원), 정주여건(지자체) 지원

□ 공모 개요

- (신청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단위 신청
- (신청기간) '25. 2. 11.(화) ~ '25. 3. 7.(금) 18:00 (도달 기준)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공고문 참고) 1부
- (신청방법) 공문 및 우편 제출*
 - * 참여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인쇄본 10부는 우편 제출
- (제출처) 보건복지부(지역의료혁신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우)30113
(전화번호 : 044-202-2681, 2683)
- (심사 절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진행을 통해 심사
- (추진일정) 신청서 마감(3.7. 18시) → 선정심사('25.3월중) → 선정 결과 통보('25.3월말)
 - *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